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
2017.9.4(월) 15:00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8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는데, 그 대상품목은 「상표법」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데 관련 법과 규칙의 조문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「상표법」 제10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제4호로, 「상표법」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각각 개정함(안 제3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상위법 및 시행규칙의 조문 번호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